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26일 05시 03분



목차

목차	2
등록현황	3
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및 비용부담	3

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및 비용부담

2014.04.17 조회수 962 등록자 박종열

관리번호	전라남도 여수시-2008-0020
담당부서	도로과
상위법령	도로법 제76조
조례	여수시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유형	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등록사유	주택건축도로
법령공표일	기존규제
존속기한	1998-04-04
규제시행/폐지일	1998-04-04
규제내용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목록

이전글

전라남도 여수시-2008-0019

다음글

전라남도 여수시-2008-0021

Yeosu Web Contents

